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주성영, 오마이뉴스에 16억 소송 내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1일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여주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허위보도했다”며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주 의원은 인지대로 615만 5천 원을 냈다.

주 의원은 소장에서 “〈오마이뉴스〉의 허위 기사로 인해 정치적 영역에서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지장 및 손해를 입었고 명예와 인격을 훼손당했다”며 “오 대표와 기자 등 7명과 윤정원 대

여성회 사무국장 등 모두 8명이 각각 2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성적 폭언의 당사자는 동석한 검사인이 밝혀져 검찰이 공식 사과했는데도 〈오마이뉴스〉가 계속 왜곡보도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9월 대구지검 국정감사 뒤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 대구지검 간부 등과 술자리를 가졌고, 〈오마이뉴스〉 등 많은 언론이 “주 의원이 여주인에게 성적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주성영 의원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 관련해 “명예훼손된 부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16억 원이란 소송금액은) 소송 당사자가 8명인데, 각각 2억 원씩 8명으로 해서 16억 원으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재판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 2005년 11월 1일

“사실과 다른 의혹보도 명예훼손 해당 손배”

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법원이 “의혹이 사실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신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3천 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비리의 고발을 생명으로 하는 시사 보도의 기능을 위축시켜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며 언론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는 14일 신부 Y씨가 KBS와 당시 ‘추적60분’의 담당 PD 홍모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3천 만 원을 지급하고 확정판결 뒤 첫 방송에서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름 및 성당의 명칭 등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일간지가 보도하고 시민단체 등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황에서 영문 이니셜과 성당의 전경이 방영됐다면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원고로 특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직접적으로 ‘원고가 아이들을 성추행했다’는 식으로 방송한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제목이 ‘신의 이름을 더럽히다-교회 내 성폭력’으로 돼있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성추행 장소로 지목한 욕실을 보여주었고 피해 아동의 상처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등의 구성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을 암시하거나 간접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반론 차원에서 경찰이 취재에 쉽게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 수사를 취재하고 원고 측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취재노력을 했어야 했다”며 “특히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뉴스와 달리 신속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주의 의무가 더욱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Y 신부는 2003년 3월부터 지방 모 성

당 부설 유치원에서 원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2004년 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해아동 측의 항고와 재항고는 모두 기각됐다.

KBS 2TV ‘추적60분’은 피해아동과 이들의 보호자, 시민단체 관계자, 담당 의사 등을 취재, 2003년 7월26일 Y 신부의 성추행 의혹을 방송했고, Y 신부는 “사실무근내용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억 원의 손해소송을 냈다.

한편 한국방송PD연합회 이강현 회장은 “유력인사의 비리와 의혹에 대한 보도는 믿을 만한 상당한 여지가 있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용인돼야 한다”며 “특히 제작자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묻는 이번 판결은 고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을 축소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5년 9월 14일

<조선> "귀족 현대차 노조" 보도, 항소심서 패소 법원, "1천 만 원 지급" 판결...노조 "오보 인정 환영"

법원이 지난 2003년 현대자동차노조의 파업 당시 이를 '배부른 투쟁' 등으로 묘사 보도했던 조선일보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노조가 중앙일간지를 상대로 항소심까지 진행해 승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현대자동차노조가 지난 2003년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근로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게 돼 우리 경제 전반 또는 소비자들, 협력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됐다는 피고(조선일보)의 의견은 독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피해의 원인을 원고(현대차노조)가 제공한 것처럼

느끼게 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피고는 위 기사를 통해 원고가 입은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慰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3년 7월 현대차노조가 주5일제 등을 핵심 쟁점으로 내걸고 파업에 들어가자 <현대차노조의 '자해행위' 제하의 사실 등에서 "평균임금이 5400만 원인 대기업노조의 배부른 투쟁"이라고 보도했으며, 파업 타결 직후인 8월 초에도 <현대차 새 휴일수, 미·일 주월> 등의 기사에서 "현대차 노동자의 연간 휴가일수가 선진국들보다 많은 결정적 이유는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월차휴가가 12일이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설했었다.

이에 대해 현대차노조는 △실제 과로 사한 노동자가 단 하루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제수당을 모두 합쳐야 겨우

54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연월차 휴가를 합친 국내의 22일(2년차 노동자)은 ILO 최저기준인 '3주 이상'을 겨우 충족하고 있다며 모두 7건의 기사에 대해 각 3000만 원씩 모두 2억1000만 원의 손해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연말 1심 판결에서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상 오보에 해당하나 공익성이 강한 대규모 노조인 현대차노조라면 이 정도의 비판은 수용해야 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현대차노조 장규호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지극히 환영한다"며 "향후에도 마녀사냥 식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 잡아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시안 2005년 10월 19일

"MBC의 유밀레씨 보도, 공적 비평에 해당"

성공한 여성기업인이자 방송인으로 널리 알려졌던 유밀레 씨(28)가 MBC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10일 유밀레 씨가 "비방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 씨에 대한 MBC 보도는 공적 비평 영역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의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나 보도내용 전반을 고려할 때 보도 목적이 원고에 대한 각 언론사들의 경쟁적인 보도 행태나 선정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언론사들의 보도 태도에 대한 피고의 의견표명 내지 논평을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피고가 취재원인 자신의 승낙 범위를 넘어선 사실들을 보도해 사생활 비밀과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인에 대한 방송은 예상과 다소 다른 방향으로 방영해도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며 MBC가 취재원인 자신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유 씨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씨는 2002년경 자신의 이름을 딴 '유밀레 공화국'이라는 의류매장을 개장한 후 각종 언론매체에 '서울대를 자퇴한 20대 젊은 여성 사업가',

'1300억 원대 미국 유명 의류브랜드의 독점 수입계약을 따낸 당찬 여성' 등으로 소개되면서 일반에 널리 알려졌다.

유 씨는 그러나 2004년 6월 MBC의 보도비평 프로그램인 '신강균의 사실은'에서 '매스컴이 키운 신데렐라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에 대한 언론의 선정주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을 방영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신강균의 사실은'에서는 유씨가 '이사'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을 뿐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와도 기획사와 연예인간의 약정계약을 맺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머니투데이 2005년 10월 10일

조선일보 비방신문 100만부 배포 ‘조아세’ 회원 3명에 벌금 21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허위사실 적어 명예훼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李炳世) 판사는 26일 ‘조아세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조선일보사를 비방한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조아세)’ 전 대표 임현구(45)씨와 전 운영위원 김창수(46), 이경섭(44)씨 등 조아세 회원 3명에게 벌금 700만원씩 모두 2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아세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기사를 썼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선일보 김홍진 기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 등은 2002년 8월 31일부터 추석연휴를 거쳐 10월까지 전국의 귀성객 등에게 허위내용이 담긴 ‘조아세 신문’ 등 100만부를 배포해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조선일보의 구독증단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경영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 등은 당시 ‘조아세 신문’에 ▲조선일보사가 신군부 측과 결탁한 대가로 서울 정동 보안사 안가 부지와 건물을 헐값에 넘겨받아 막대한 경제

적 이익을 챙겼고, ▲2002년 월드컵 때 미국의 쇼트트랙 선수 오노를 빗댄 안정환의 골 세레모니에 대해 반미감정을 부추킨다는 이유로 못 본 채 무시했다고 게재했다.

또 ▲조선일보사가 5공화국 7년 동안 권언유착을 통한 특혜로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 결국 1위로 뛰어올랐고, ▲코리아나 호텔 신축 때 정권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를 조아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아세가 주장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허위의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한 의견, 논평”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게재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점 ▲안정환의 골 세레모니와 같이 쉽게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보도하지 않았다고) 바꾸고 ▲보안사 안가 부지 가격을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50억 ~ 80억 원에 해당한다는 월간 말지 보도내용을 ‘당시가격으로

50억 ~ 80억 원이었다’고 바뀌가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조아세의 기본 목적, 설립 취지 등에 비추보면 이들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어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2002년 10월 26일자 조선일보 ‘독자와의 대화’ 면에 “조아세 회원들은 신문을 훔치고, 조선일보를 끊을 것을 강요한다. 조아세의 활동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김홍진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인물 발행 비용에만 2억 원이 소요되는 활동의 자금 출처가 공개되지 않았고, 엄청난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기사 역시 진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2005년 8월 27일

“언론보도 과장 섞여도 진실이면 적법”

언론 보도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부합된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동영)는 25일 군인공제회가 “S영농조합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보도한 KBS와 해당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파기의 궁극적 원인은 군인공제회가 S영농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 단가를 정한 뒤 이를 강요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도가 원고를 비난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 부분이 진실과 합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도가 일부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측면이 있지만 내용으로 볼 때 진실성과 공공성이 존재하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며 “언론기관은 공공법인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감시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6월 S영농조합과 “5% 이상 가격변동이 있으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국산 두부콩 납품계약을 맺은 뒤 콩값이 떨어지자 “단가를 낮춰 수정계약을 맺지

않으면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한 뒤 S사가 불응하자 계약을 취소했다.

이어 KBS가 올 2월 9일 뉴스 등을 통해 ‘계약 일방적 해지’란 제목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군인공제회가 농민 입장은 아랑곳없이 자신들 잇속만 채우고 있다”고 보도하자 “S사가 수정계약 체결을 거부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했고 S사는 영리법인일 뿐 농민이 아니다”며 정정보도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2005년 10월 25일

여야의원들 “포털도 언론 중재대상에 포함돼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를 지적하며 ‘신문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7월28일 신문법과 함께 발효된 언론중재법은 신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인터넷신문의 정의(취재 인력 2인 이상, 자체 생산 기사 30% 이상)를 준용하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와 신문사 닷컴은 인터넷신문에 해당되지 않고 이에 따라 언론중재 대상에도 빠져 있다.

열린우리당 노용래 의원은 29일 언론중재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들이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등 인터넷신문에 비해 훨씬 방문자 수가 많은 데도 인터넷신문으로 규정되지 않아 오프라인 신문에서는 정정보도등으로 피해가 구제돼도 포털 사이트들이나 신문사 닷컴에서는 정정이 안 되고 있다”면서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선거법)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선거법은 인터넷매체를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당의 윤원호 의원도 “언론중재

법 시행 이후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의 상담건수 가운데 27건이 인터넷매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언론중재 대상이 아닌 포털 사이트와 신문사 닷컴이 13건이었다”며 법적 보안을 촉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빠른 확산성, 무한 복제성, 파급력 등의 면에서 어떤 매체보다 영향력이 큰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언론중재 대상에서 빠진 것은 불합리한 상황”이라면서 “신문법의 개정 없이도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재홍 의원은 “반론보도·정정보도 청구사예 9건을 분석한 결과 단 1건만이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기사’ 형식으로 반론보도를 게재했다”면서 “언론중재법 15조 3항을 개정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도 정정이나 반론보도문 등의 제목을 단 관련문을 게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운 의원도 “원문을 수정하더라도 여기저기 유포된 기사를 하나씩 찾아서 수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인터넷 뉴스 유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8월 한나라당 전여욱 의원이 언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매체가 6시간 안에 소명문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법을 개정하자 하는 이른바 ‘그린박스제’ 도입 방안에 대해 “해당자의 거짓말과 변명에 무력하게 될 우려가 있어 언론자유에 심각

한 위협을 준다”고 비판하는 한편 “인터넷언론 전담 중재부를 신설하고 24시간 당직제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의 심재철 의원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출한 사이버 공간의 피해 상담 건수가 최근 5년여 동안 500% 이상 급증했다”면서 “인터넷 공간의 기사는 순식간에 확대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수정하는 동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처분 절차와 같은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정병국 의원과 박형준 의원도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바꿀 것을 주장했으며,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이른바 ‘개똥녀’ 사건을 예로 들며 “쌍방향성, 지속성, 익명성 등의 속성을 지닌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기존 언론과는 차별화된 기준과 세부적 지침, 그리고 중재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은 “신문법을 제정할 때 인터넷신문의 대상을 극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 언론중재위도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일단 조금 더 시행해본 뒤 문제점을 파악해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민일보 2005년 9월 29일

한겨레신문 상대 10억 손해소

순화규 경기도지사는 4일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이 받은 돈의 일부가 손 지사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최악의 보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지사는 “존재하지도 않은 검찰 관계자의 입을 빌려 없는 일을 사실로 만들어낸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번 사태를 한나라당과 본인에 대한 의도적인 꾀박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손 지사는 “이번 사태로 인해 본인과

한나라당이 입은 피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며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한겨레신문 발행인등 5명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2005년 11월 6일